

후원물품 등에 관한 관리규정

제 개정 연혁

- 2015년 3월 31일 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(이하 '협회' 라 함)의 기부물품 및 후원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기부물품"이란 반대급부 없이 국내외 각종대회 및 훈련 등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협회에 제공된 물품인 격려물품"과 반대급부 없이 용도를 정하지 않고 협회 제공된 물품인 찬조물품"을 말한다.
2. "후원물품"이란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, 행사의 휘장, 명칭 등 사용의 반대급부로 후원자가 협회에 제공하는 물품을 말한다.

제2장 사용 및 정산

제3조(사용기준)

기부물품 및 후원물품은 기부자나 후원자의 지정용도 및 협회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.

제4조(지급대상 및 용도)

기부물품 및 후원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

1.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, 트레이너 및 팀 매니저 등
2.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관계자
3. 협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
4.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
5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제5조(지급제한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부물품 및 후원물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자
2.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선수단의 명예 또는 국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
3. 그 밖에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

제6조(집행과 정산)

기부물품 및 후원물품의 집행은 사무국에서 내부보고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, 처리 결과를 결산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3장 사후관리

제7조(사후관리)

- ① 기부물품 및 후원물품은 사무국에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관리대장(별지 제1호 및 제2호)을 마련하여 접수, 지급 및 관리현황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 위 관리대장의 접수 내역 등의 기록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.
- ② 협회는 직원 중 1인을 기부물품 및 후원물품 관리자로 지정한다.

부칙<2015. 3. 31.>

제1조(시행일)

본 규정은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